

★ 노동부지정 석면조사 및 분석 전문 기관 ★

# (주)청담이엠텍 산업보건연구센터

480-819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02 영일빌딩2,3층/T(031)878-8188/F(031)878-1576

문서번호 청담 제 14-0610001호  
 시행일자 2014. 06. 10.  
 수신 태정해체산업  
 참조 정동규 대표님

선결			지시	
접수	일자 시간		결재 · 공람	
	번호			
처리과				
담당자				

제목 “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27”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송부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을 기원합니다.
2. 환경부고시 제 2012-79호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제40조에 의거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측정의뢰자 (석면해체·제거업자)	상호 태정해체산업	대표자 정동규
	현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27	
	작업일시 2014년 06월 08일 ~ 2014년 06월 08일 (1일간)	
측정기관	상호 (주)청담이엠텍	대표자 박준석
	측정일시 2014년 06월 08일 ~ 2014년 06월 08일 (1일간)	

■ 측정자(분석자 포함)

성명	자격종목 및 등급	자격등록번호	비고
이지용	대기환경산업기사	02201013347P	측정자
박은혜	위생공학전공자	-	분석자

첨부 :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, 석면조사기관 지정서

(주)청담이엠텍 산업보건연구센터 센터장 박준석



##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		
제출인	상호(대표자) 태정해체산업 (정동규)		사업자등록번호 127-45-50015	
	주소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73 (신읍동)			
건축물	건물명 가톨릭출판사		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27	
	연면적(㎡) -		작업기간 2014년 06월 08일 ~ 2014년 06월 08일 (1일간)	
	석면건축자재[길이(m)·면적(㎡)·부피(㎥)] 159.6㎡(텍스타일:159.6㎡) <span style="float: right;">(필요시 별지 첨부)</span>			
측정기관	상호(대표자) (주)청담이애크 (박준석)		사업자등록번호 127-81-97546	
	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동 746-33 영일빌딩 2,3층			
측정 일시	2014년 06월 08일 ~ 2014년 06월 08일 (1일간)			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 결과(f/cc)	검출석면
		별	침	

측정 지점 위치(도식도)

별첨
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.

2014년    월    일

제출인

태정해체산업 정동규 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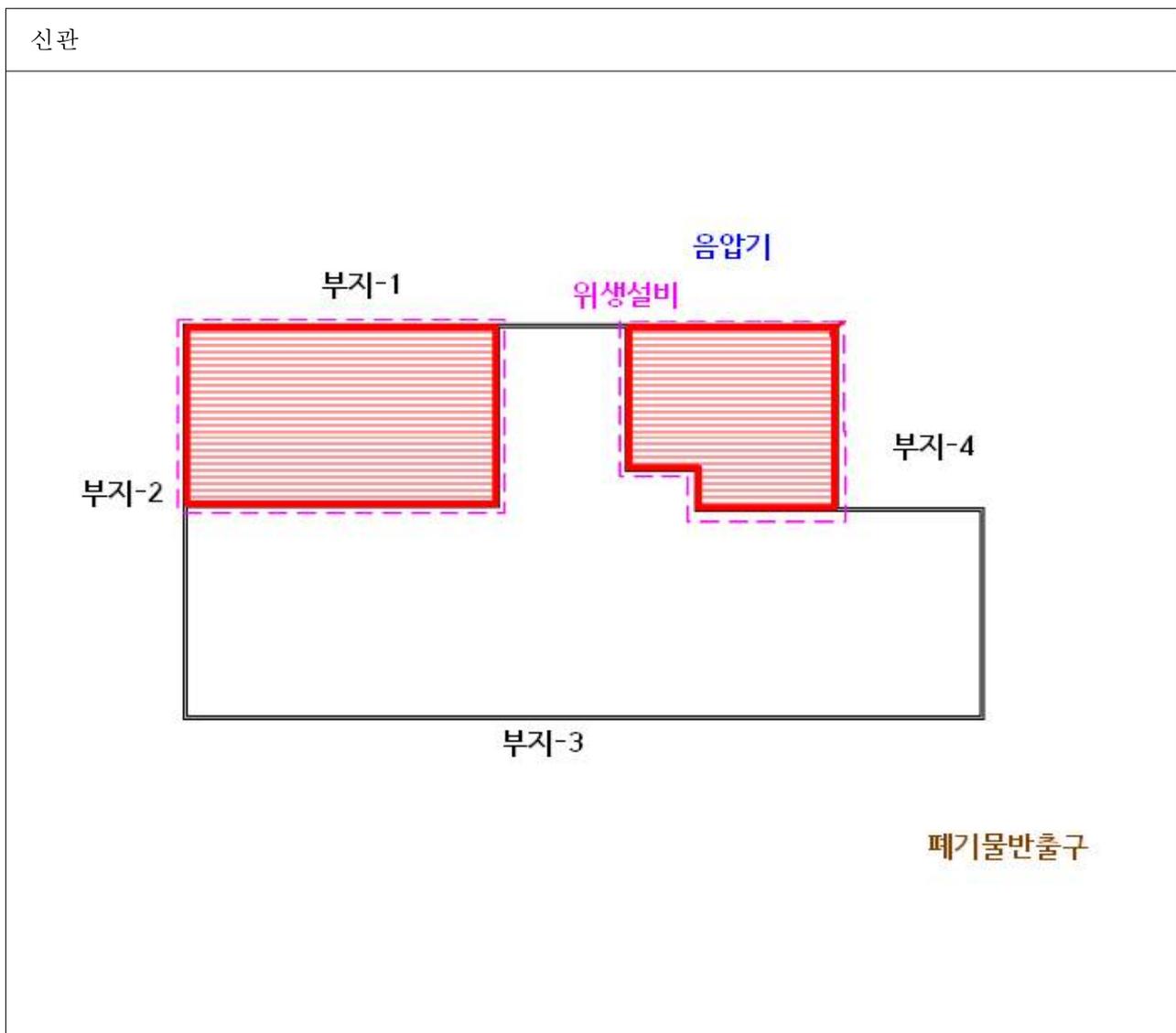
**서울시 중구청장** 귀하

첨부서류	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 사본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**\*별첨 <측정 결과>**

2014년 06월 08일			
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 결과(f/cc)	검출석면
B14060801	부지-1	0.002	백석면
B14060802	부지-2	0.002	백석면
B14060803	부지-3	0.001	백석면
B14060804	부지-4	0.001	백석면
B14060805	위생	0.005	백석면
B14060806	음압기	0.003	백석면
B14060807	폐기물반출구	0.005	백석면

**<측정지점위치>**



\*석면조사기관 지정서

제2010-120002호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최초)

기관명	(주)청담이애타	
소재지	(480-100)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746-33번지 영일빌딩 2층	
대표자성명	박준석	
지정사항	총 대행(지정) 한 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관 할 지 역 대 행(지정) 한 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대 행(지정) 지 역	전국

※ 준수사항

1.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지방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2. 석면조사기관은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10. 11. 11

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

